

지하수개발·이용 신고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7일	
신고인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	(전화번호:)			
개발·이용 내용	위치						
	좌표(경도, 위도)		용도(세부 용도)		먹는물 사용 여부		
시설설치 내용	굴착 깊이		굴착 지름				
	m mm						
		취수계획량		m³/일			
양수설비 내용	동력장치		토출관 안쪽 지름		mm		
	HP						
		설치 깊이		양수능력		m³/일	
		m					
착공 예정일				준공 예정일			
공사 예정 시공업체	업체명		대표자		등록번호		
	주소		(전화번호:)				

※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「지하수법」 제7조제6항 단서·제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·이용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(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「지하수법」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 2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도(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) 3.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) 4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※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「지하수법」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